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609

○ 제 안 자 : 김원태 의원 외 32명

○ 제 안 일 : 2023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서울시 산하 일부 자치구에서는 최근 들어 5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 시는 3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산하 자치구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50일로 늘렸고, 전주시에서는 40년 이상 재직자 10일 휴가를 추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 서울시 본청 근무 공무원들이 자치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장기재직휴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일부 타시도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개선하는 사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3. 주요내용

○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입법예고(2023. 4. 6. ~ 4. 10.)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운영중인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 기간에 따라 확대(안 제24조제11항)하려는 것임.
 - ※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동일한 적용을 위하여, 동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시울시의회에 발의(「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되어 있는 바, 연계 처리 가능성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5년 이상~10년 미만	해당없음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15일
20년 이상~30년 미만	20일	25일
30년 이상	20일	25일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⑩ (생	제24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
략)	과 같음)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①
<u>10년</u>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u>10일</u> , 20	<u>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u>
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	<u>15일</u>
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u>20일</u> 의 휴가	<u>25일</u>
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① ~ ⑱ (생 략)	① ~ ⑱ (현행과 같음)

- 동 개정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기간 부여 일수를 확대하여 공직 생활을 위한 재충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제1항¹)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는 부합한다고 하겠음.
- 다만, 장기재직 휴가 일수 확대 시행에 따른 국가직 공무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장기재직 휴가에 따른 대직자 업무 과중 해소방안 등 종합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서울시와 유사한 정도의 휴가를 운용하고 있는 바, 서울시 차원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 확대 시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17개 광역시·도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

(2023년 3월 기준)

구분	5년 ~ 10년미만	10년~ 20년 미만	20년 ~ 30년 미만	30년 이상
서울특별시	-	10	20	20
경기도	_	10	20	20
인천광역시	5	10	20	20
부산광역시	-	10	20	20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5	10	20	20
울산광역시	-		60일	
광주광역시	-	10	20	20
대구광역시	-	10	20	20
강원도	-	10	20	20
충청남도	-	10	20	30
충청북도	-	10	20	20
경상남도	-	10	20	20
경상북도	-	10	20	20
전라남도	-	10	20	20
전라북도	-	10	20	20
제주특별자치도	-	10	20	20
세종특별자치시	-	10	15	20

〈 서울시 및 자치구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

(2023년 3월 기준)

구분	5년 ~ 10년미만	10년~ 20년 미만	20년 ~ 30년 미만	30년 이상
서울특별시	-	10	20	20
강남구	-	10	20	30
강동구	5	10	20	30
강북구	ı	10	20	20
강서구	ı	10	20	20
관악구	5	10	20	30
광진구	5	10	20	20
구로구	5	10	20	30
금천구	5	10	20	20
노원구	5	10	20	30
도봉구	5	10	20	30
동대문구	5	10	20	30
동작구	-	10	20	20
마포구	5	10	20	20
서대문구	5	10	20	30
서초구	-	10	20	20
성동구	5	10	20	30
성북구	-	10	30	30
송파구	10	20	30	30
양천구	5	15	25	30
영등포구	-	10	20	20
용산구	5	10	20	20
은평구	-	10	20	20
종로구	-	10	20	30
중구	-	10	20	20
중랑구	5	10	20	30

- 아울러,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하여 근무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임기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장기재직 휴가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연간 휴가 예상 인원이 약 1,8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바,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및 대체근무 인력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 재직 기간별로 일괄적으로 휴가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우선 5년이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를 도입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현황** (2023. 3. 31. 기준) 〉

(단위: 명)

구분	연간휴가 예상인원	5년이상 재직자 계	5년~9년	10~19년	20~29년	30년이상
총계	1,853	7,410	1,555	2,048	2,384	1,423

- 전체 현원은 10,302명임, 연간 예상인원은 전년도 휴가 사용률 참조하여 추정

※ 2022년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0~19년	20~29년	30년이상
대상 인원	5,834	1,982	2,555	1,297
휴가사용 인원	1,459	320	774	365
사용률	25.0%	16.1%	30.3%	28.1%

-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또한, 기존에 이미 특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 예방을 위해서 현행 조례 부칙 조항에 명시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행정국은 기존 휴가사용 직원의 소급적용 관련, 특별휴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 추후 적용대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휴가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시행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장기재직 휴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재직 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과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법조사관	이 태 기
			, , ,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1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특별휴가 현황 〉

	휴가 종류	휴가 사유	휴가 일수
	경 조 사 휴 가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경조사 및 대상에 따라 1~20일
	출 산 휴 가	임신, 조산 위험 또는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 전후 총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 120일)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 및 배우자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배우자 3일
	여성보건휴가	생리 기간중 휴식을 부여	매월 1일(무급)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경우	임신 기간중 10일
	모성보호시간	임신공무원	임신 기간중 일 2시간
	육 아 시 간	만 5세(생후 71개월)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24개월 이내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여성 최대 4일, 남성 1일
특	수 업 휴 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중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출석 수업에 참석할 때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일수
˙ 별		재해피해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	5일 이내
휴 가	재해구호휴가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10일 이내
	성과우수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0일 이내
	(사가독서휴가)	아이디어 발굴 및 자율적 학습기회 제공	2일(1회 1일 단위 분할가능)
	<u>장기재직휴가</u>	<u>10년~19년, 20년~29년, 30년 이상 재직자</u>	10~20일
	자녀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입영 당일 1일
	가족돌봄휴가	미성년 자녀 및 그 외 가족(성년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10일 이내(미성년 자녀돌봄, 장애 자녀의 부모, 한부모공무원 2~3일 유급, 그 외 가족돌봄 사유 무급)
	심리안정휴가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	3일 이내 * <i>소방공무원</i>
	투개표사무종사 특 별 휴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인력 지원한 공무원(투·개표사무)	1일

〈 현행 장기재직 특별휴가 지침 〉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20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중 발췌)

○ 목 적

-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자기성찰을 통한 인생재설계 및 심리 치유 등을 통한 적극·능동적이며 창의적인 공직자 육성

○ 휴가대상자 및 휴가일수

- 대 상: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구분	10년~19년	20년~29년	30년 이상	비고
휴가일수	10	20	20	

- **사용방법** : 10일(20일) 단위 실시가 원칙이나, 10일 휴가는 1회 분할, 20일 휴가의 경우 최대 3회 분할 실시 가능

에시1】10일 실시방법: 2+8일, 3+7일, 4+6일, 5+5일 등의 방법으로 실시 에시2】20일 실시방법: 5+5+5+5일, 3+7+4+6일, 10+10일 등의 방법으로 실시

○ 재직기간 산정 기준일 : 2023. 1. 1.기준

○ 시행방법 및 연도중 기간도래자 등에 대한 예외조치

- <u>2023. 1. 1.기준 재직기간이 19년11월인 경우 2. 1자로 재직기간이 20년이 도래하여도</u> 금년 12.31까지는 19년차 장기재직휴가 사용 대상임
- <u>2023. 1. 1.기준 29년10개월이었던 공무원이 2023. 3월 30년차 장기재직휴가가 도래</u> 하는 경우 30년차 장기재직휴가를 2023년도 3월부터 사용 가능
- 장기재직휴가는 주기 내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 개인의 사정에 따라 따라 20일인 경우 3회 분할, 10일의 경우 1회 분할하여 주기내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주기에 부여된 휴가를 같은 해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국감, 행정사무감사기간 및 부서 주요업무 추진기간 중 휴가 자제
- 1주일 이상 장기휴가를 시행하는 공무원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 자 지정과 업무 인계·인수 등 철저
- 전입 등으로 타 시·도 및 자치단체(자치구, 의회 등)에서 전입 전 사용한 주기별 장기 재직휴가를 동일한 주기에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장기재직특별휴가와 연가와의 연계사용

- 장기재직특별휴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권장

○ 휴가 시 유의사항

- 간부직공무원이 솔선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적극 사용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행정포털 "복무관리"등록 시 휴가구분은 "특별휴가"의 "장기재직휴가"를 선택하여 등록하고 휴가사유도 "장기재직특별휴가"로 기재
- 휴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
- 휴가자의 담당사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공백 방지